

- 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에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 기금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토록 함.
  - 제12조(시행규칙)를 신설하여 위임규정을 둬.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24
----------	-----

2000년 7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 6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행정관리국장 : 김계중)  
 가. 제안이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이 2000.1.1부터 1개 등급(7급)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봉사한 상이국가유공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항)
- 나. 주요골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봉사하던 중 상이자가 된 자들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신설된 상이등급 7급 상이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종식)  
 ○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

- 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이 2000.1.1부터 1개 등급(7급)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도 기존 상이등급(1-6)과 같이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코자 함임.
- 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봉사하던 중 상이자가 된 자들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신설된 상이등급 7급 상이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국세인 특별소비세에서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상이국가유공자 모두를 면제하고 있고, LPG 연료사용 범위에 있어서도 상이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시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9개 시·도에서는 면제 확대에 찬성하였고(서울 50%감면, 대전 세수보전 요청), 나머지 7개 시·도에서는 지방재정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 안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